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04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한정애·김준형·정성호

박지원 · 서영교 · 송옥주

김영배 · 김주영 · 김재원

이용우 · 이수진 · 조 국

의원(12인)

제안이유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도입 후 19년이 지난 지금도 연금제도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 주요 원인으로 낮은 가입률('22년 53.2%)과 함께 극히 저조한 연금 수령률('23년 10.4%) 등으로 인한 연금제도로서의 기능 상실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제도가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속에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현재 퇴직연금은 투자 전문가가 아닌 기업(가입자)이 운영 방법을 지시하는 계약형 퇴직연금 위주이고, 원리금 보장형 선호로 인하여 수익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수익률 제고를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의 확대 개편과 아울러 역량 있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다수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개편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이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라고 함), 국민연금공단은 상시 100명 초과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이를 "국민퇴직연금기금"이라고 함)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수익률 제고를 통해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 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확대 개편함(안 제2조제14호).
- 나. 국민연금공단을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로 참여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
- 다.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운영비의 국고부담을 명시함(안 제23 조의14 및 제23조의15).

법률 제 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11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각각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근로자"로, "중소기업"을 "기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을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 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4장의2의 제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을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하다.

- 1. 근로복지공단(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하며, 이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라 한다)
- 2. 국민연금공단(상시 100명 초과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하며, 이를 "국민퇴직연금기금"이라 한다)

제23조의3의 제목ㆍ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각각 "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23조의5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각각 "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

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한다.

제23조의6의 제목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을 "기업"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23조의7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각각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23조의8의 제목·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 중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를 각각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23조의9 본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로 한다.

제23조의10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23조의11 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로 한다.

제23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

금기금제도"를 각각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23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후단 및 제2호 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각각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23조의14제1항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로, "중소기업퇴직연금"을 "기업퇴직연금"으로,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23조의15 및 제23조의16을 각각 제23조의16 및 제23조의17로 하고, 제23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3조의16(종전의 제23조의15) 제1항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각각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3조의15) 제2항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23조의15(국고부담) 국가는 매년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23조의17(종전의 제23조의16)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의 기업퇴직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으로하며,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

금제도"로 한다.

제26조제6호 중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을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사업"으로, "30명"을 "100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	6	
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	<u>기업퇴직연금</u>	
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	<u>기금제도</u>	
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11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u>제도</u> 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		
다.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14.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u>	14. <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u>	
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u>근로자</u>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	<u>기업</u>	
<u>다) 근로자</u> 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		
여 둘 이상의 <u>중소기업</u> 사용		
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		
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		

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 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 다.

15. · 16.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한다.

15.·16. (현행과 같음)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u>.</u>
②
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
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
연금공단
<u>срос</u>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 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 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 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 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 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 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 ----기업퇴직연금기금 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 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 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 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 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 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 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 (4) -----

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u>도</u> 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
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
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운영) ①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 한다.

<신 설>

<신 설>

②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 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4장의2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2(<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의 운영) ① <u>기업퇴직연금기금</u> 제도는 다음 각 호의-----

- 1. 근로복지공단(상시 100명 이 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에 한정하며, 이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이라 한다)
- 2. 국민연금공단(상시 100명 초 과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에 한정하며, 이를 "국민퇴직 연금기금"이라 한다)
- ② <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기업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③ ~ ⑤ (생 략)
-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u> 운용 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 2.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작 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생략)
- 4. 그 밖에 위원장이 <u>중소기업</u> <u>퇴직연금기금제도</u> 운영과 관 런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운 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 항
- ① 위원장은 <u>중소기업퇴직연금</u> <u>기금</u> 운용 등과 관련하여 운영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⑧ (생 략)
- 제23조의3(<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u> 저의 관리 및 운용) ① 공단은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u>의 안정 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

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
③ ~ ⑤ (현행과 같음)
6
1. <u>기업퇴직연금기금</u>
2 <u>기업퇴직</u>
연금기금표준계약서
3. (현행과 같음)
4 <u>기업퇴직</u>
<u>연금기금제도</u>
⑦기업퇴직연금기금
(V <u>/ 日月年10日/ 日</u>
 ⑧ (현행과 같음)
세23조의3(<u>기업퇴직연금기금</u> 의
관리 및 운용) ①기업
퇴직연금기금
·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u>중소기업퇴직연금기</u> 글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u>중소기업퇴직연금기</u> 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 하여야 한다.
-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① 공단 전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 업무
 - 2. (생략)
 - ② (생략)
-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저 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

② <u>기업퇴직연금기금</u>
·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①
 1. <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2. (현행과 같음)② (현행과 같음)
세23조의5(<u>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u>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기신티기선
<u>기업퇴직연</u> 금기금표준계약서
<u> </u>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2. (생략)
- 3. 제23조의3에 따른 <u>중소기업</u> <u>퇴직연금기금</u>의 관리·운용 업무에 관한 사항
- 4. 5. (생략)
- 6. 그 밖에 <u>중소기업퇴직연금기</u> 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 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 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불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중 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생 략)
- 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
 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
 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1. · 2. (현행과 같음) 3기업퇴직
<u>연금기금</u>
4.·5. (현행과 같음)
6기업퇴직연금기금제
<u>도</u>
2
<u>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u>
저
기업퇴직
연금기금표준계약서
③ (현행과 같음)
세23조의6(<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의 설정) ① <u>기업</u>
<u>기업퇴직연</u>
금기금표준계약서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 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u>중소기업퇴직</u> 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 다.

②·③ (생 략)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 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 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 다)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이 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 정"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 진 기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표준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 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기업퇴직연금기금
<u>제도</u>
<u>기업퇴직연</u>
<u>금기금제도</u>
<u>7</u>]
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 야 한다.

②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 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기 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 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 정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 (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 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②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8(<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 는 사람
- 2. (생략)
- 제23조의9(가입기간) 중소기업퇴 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 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 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 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u>중</u> 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

· 1.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 <u>// 日本/ // 七 日 // 日 // 日 // </u>
2. (현행과 같음)
제23조의9(가입기간) 기업퇴직연
금기금제도
<u>.</u>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u>기업퇴직연금기금</u>
<u>7</u>]
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u>기</u>
업퇴직연금기금제도

- -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u>중소기업퇴직</u>연금기금제도"로 본다.
 - 2. (생략)
 - ② · ③ (생 략)
-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는 "<u>중소기업퇴직연금기</u> 금제도"로 본다.
 -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국가

या ४० देन । या १ तम् १ तम् १ तम् १
요건 등) ① <u>기업퇴직연금기금</u>
<u>제도</u>
1
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1
<u>기업퇴직연금</u>
<u>기금제도</u>
2
<u>기업퇴직연금</u>

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환수할 지원금액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수 있다.
- 1. 2. (생략)
- 3. 사용자가 도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

<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u>기업퇴직연</u> 금
사용자부담금,
<u>가입자부담금</u>
·
② (현행과 같음)
③
,
 1.·2. (현행과 같음) 3

이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를 폐지한 경우 ④ ~ ⑥ (생 략) <u>선</u> 설>

-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매년 <u>중소기업퇴직</u> 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 현황 및 수익률 등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 여야 한다.
 - ③ 공단은 <u>중소기업퇴직연금기</u> 금표준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 자에게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하 여야 한다.

④ (생 략)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의15(국고부담) 국가는 매
년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관
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u>제23조의16</u> (공단의 책무) ①
<u>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
② <u>기업퇴직연금</u>
<u>기금제도</u>
<u>.</u>
③기업퇴직연금기금표
<u>준계약서</u>
④ (현행과 같음)

제23	}조	의1	<u>6</u> (ス	도	• 감	독	등)	<u> 1</u>	1용
ታ	-동	부경	상관	슨	<u>중</u>	소기	입업	퇴즈	연
<u></u>	[7]	금지	베도	의	원:	활한	<u>-</u> .	운영	을
9	하	여	공	단이	じ	음	각	টু	의
<u> </u>	항	을	보.	고하	게	하기	식나	· 소	속
구	- 무	원.	으로	하	여들	1 -	1	장부	
入	류	또	는	ユ	밖의	의	물건	을	검
入	하	게	할	수	있으	며,	필.	요ㅎ	나다
Ţ	1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	대통	긍
己	90	로	정	하는	н	-에	따	라	コ
년 신	- 영	등	-에	시	정을	명	할	수	있
Ľ	} .								

- 1.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

 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 2.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 정 및 운영 등)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 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1. (생략)
-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

제23조의17(지도·감독 등)
기업퇴직연금기금
<u>제도</u>
공단의 기업퇴직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u><삭 제></u>
<u><삭 제></u>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
정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
<u>유</u>)
2
 1. (현행과 같음)
1. (1.07 ED)

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 3.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
 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6. <u>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u> 대상은 상시 <u>30명</u> 이하의 근 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 한다)
 - 7. (생략)
-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 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 1 『설체되 가이
1. ~ 5. (현행과 같음)
6.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사업-
<u>100명</u>
7. (현행과 같음)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하여야한다.

1. ~ 4. (생 략)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① 저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이법 또는 퇴직연금규약 및 중소기업퇴직연 금기금표준계약서에 위반되는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수 있다.

, (취례가 가수)
② ~ ④ (현행과 같음)
5
<u>기업퇴직</u>
연금기금제도
1. ~ 4. (현행과 같음)
베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① -
기업퇴직연금기
<u>금표준계약서</u>
,